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11056 지방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취득세 71,026,860원, 지방교육세 6,649,120원, 농어촌특별세 9,117,4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10. 16.에 한 재산세 2,088,400원, 지방교육세 417,68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1.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서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22.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 11. 4. 같은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증축하였으며, 2012. 3. 7.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건축물 증축 및 경락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2015. 7. 16.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redacte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쇼케이스(업소용 진열장, 냉장고) 사업을 승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시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8.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취득세 71,026,860원, 지방교육세 6,649,120원, 농어촌특별세 9,117,4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10. 16.에 한 재산세 2,088,400원, 지방교육세 417,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9. 5. 21. [redacted]구 [redacted]에서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2012. 12. 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동종의 사업'에 대한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소외회사와는 명백히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 즉 원고가 [redacted]구 [redacted]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시작한 2009. 12. 22.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사업용 자산 총 가액 대비 약 18.55%에 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이 규정한 30% 이하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 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1985. 5.경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를 사업장으로 쇼케이스 생산을 개시하였는데 2009. 5.경 소외회사의 적자사업 정리를 위해 쇼케이스 공장 등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9. 5. 21.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2) 원고는 2009. 6. 1. 소외회사로부터 쇼케이스 사업부분의 각종 자산뿐만 아니라 관련 종업원과 영업권을 모두 포함하여 기존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30. 양수도대금을 정산하였다.

3) 원고는 2009. 6. 11. 소외회사로부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소재 쇼케이스 사업부분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고 2009. 7.경 쇼케이스 생산을 시작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22.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 11. 4. 같은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증축하였으며 2012. 3. 7.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와 소외회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구 분	원 고	소 외 회 사
대분류	C (제조업)	
중분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851(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인정근거]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의 사업과 소외회사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관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상 '등록내용'란 '공장의 업종(분류번호)'는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29171)'으로 기재된 사실, 소외회사에 관한 공장등록당시 업종분류코드는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28519)'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위 공장등록증명서나 공장등록대장관리상 분류번호 또는 업종코드는 공장 설립 신고를 하는 사람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해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해 넣는 것일 뿐이고, 그에 따라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도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점,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는 의미는 그 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공장등록증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세분류에 따라서만 판단하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만일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위 분류번호 또는 업종코드만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과 소외회사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자등록, 공장등록증 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2021 판결 참조).

㈏ 이 사건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사업과 소외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의 사업'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2009. 6. 1.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의 산업용 냉장고를 생산하는 쇼케이스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1. 소외회사의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소재 공장시설을 4개월간 임차하여 쇼케이스를 생산하였다.

② 원고는 2009.12. 22.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이후에도 계속 쇼케이스를 주된 생산품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③ 원고는 원고의 사업과 소외회사의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동종의 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소외회사의 전체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쇼케이스 사업부문만 인수를 하였고 원고의 실제 생산활동도 인수한 사업 부문과 같은 쇼케이스 생산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사업 중 원고가 인수한 사업만을 가지고 원고의 사업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회사의 규모 및 전체사업에서 원고가 인수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원고와 소외회사가 실제로 영위한 쇼케이스 제조업의 규모, 소외회사의 매출액 및 그 매출액에서 쇼케이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쇼케이스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 원고의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었는지, 국가경제에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하였는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의 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제11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포함)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사업개시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우 원고는 2009. 5. 2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사업개시일은 2009. 5. 21.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6. 1. 소외회사로부터 쇼케이스 사업부분의 각종 자산뿐만 아니라 관련 종업원과 영업권을 모두 포함하여 기존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30. 양수도대금을 정산하고 소외회사의 자산을 인수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 2009. 5. 21. 에 가까운 2009. 6. 30.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인수·매입하는 자산이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비율이 30% 이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내지 원고의 사업개시일이 2009. 5. 21.이 아닌 2009. 12. 22. 내지 2009. 12. 31.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9

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